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797

발의연월일: 2021. 7. 28.

발 의 자: 문진석 · 김민철 · 이형석

송갑석 • 안민석 • 서영석

이정문 • 이용빈 • 홍익표

이규민 · 조오섭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노인이 자주 왕 래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 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노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병원과 시장 주변은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노인 교통사고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2018년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반경 2 00미터 이내에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529곳의 사고 2,156건을 분석한 결과, 병원 주변이 654건(30.3%), 시장 주변이 458건(21.2%) 순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에 노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병원과 시장 주변 등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인 노

인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의2에"를 "제3호의2부터 제3호의6까지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를 제3호의6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 3의3.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 3의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
- 3의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	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u>제3호의2에</u> 따른 시설의 주	제3호의2부터 제3호의6까지
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	<u>에</u>
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u> 3의2. 「의료법」 제3조제2항</u>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u><신 설></u>	3의3. 「지역보건법」 제2조제1
/ k]	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u><신 설></u>	3의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
	호에 따른 보건진료소

<u><신 설></u>	3의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
	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전통시장
<u>3의2.</u> (생 략)	<u>3의6.</u> (현행 제3호의2와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